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52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현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원준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3. 선고 2020가소725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8.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D 명의 계좌로 9,81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8. E에서 ‘해외 구매대행 하실 직원 구함, 일급 10만 원’의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일을 하는데, 회사 돈을 계좌로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매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명의 계좌에서 9,700,000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2020. 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품권 구매대행일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으로 9,8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 주장에 관하여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